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최혁진의원·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8.

발 의 자 : 최혁진·복기왕·이수진

염태영·박지원·김우영

민형배·김영배·정혜경

윤종오·한창민·민병덕

이성윤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,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.

특히,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.

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27조 제2항 신설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, 미수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(이하 이 조에서 “외상매출금등”이라 한다)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.

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등
2. 거래상대방의 파산,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
3.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
4. 그 밖에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상매출금등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7조(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, 미수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(이 하 이 조에서 “외상매출금등” 이라 한다)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있다.</u> <u>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 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 정된 외상매출금등</u> <u>2. 거래상대방의 파산, 폐업으 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 금등</u> <u>3.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 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</u> <u>4. 그 밖에 회수할 수 없는 외 상매출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</u>
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략)	<u>로 정하는 외상매출금등</u> <u>③</u> ·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